

## 카메라 장착 드론에 대한 지상 제3자의 법익 보호 - 독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성미\*

### 목 차

- I. 서 론
- II. 재발위험에 따른 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사례
  - 1. 참조조문
  - 2. 사실관계
  - 3. 쟁점사안 및 법원의 판단
- III. 제3자의 긴급피난을 인용한 사례
  - 1. 참조조문
  - 2. 사실관계
  - 3. 쟁점사안
  - 4. 법원의 판단
- IV. 국내 관련 법률 검토
  - 1. 「항공안전법」 및 그 밖의 개별법
  - 2. 「민법」 상 관련 규정
  - 3. 검토
- V. 마치며

\* 한국항공대학교 강사 (E-Mail : [kimsm04@gmail.com](mailto:kimsm04@gmail.com)).

## I. 서론

급속도로 상용화되고 있는 드론<sup>1)</sup>은 사용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지상의 제3자에게는 다양한 측면으로 위협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특히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sup>2)</sup>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129조제4항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침해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미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미 유출된 개인 정보의 확산은 막을 수 없다는데 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이미 온라인에 게재된 경우 100%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위협적이다.

특히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경우, 녹화 또는 실시간으로 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므로 지상 제3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대해 독일 법원은 카메라장착 드론이 주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경우 지상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3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하급심판결<sup>3)</sup>은 독일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드론의 상용화에 따라 카

- 
- 1) 본고에서 의미하는 드론이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0.5.1.) 제2조 제1항제1호 가목의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의미한다. 무인항공기의 경우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현재 직면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드론의 구별에 관하여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므로, 본고에서 재차 분류하여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생략한다. <자세히, 김성미, “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 2)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미국정책입법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4; 김명수, “드론의 안전한 운영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법제논단』 10월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
  - 3) 독일은 연방일방법원(Bundesgerichtshof, BGH)의 하급심으로 각 주마다 구(區)법원으로 제1심 간이법원(Amtgericht, AG), 지방법원(Landgericht, LG),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OLG)을 두고 있다. 제1심 법원(AG)의 판단은 단독판사로, 민사재판의 경우 소송가액

메라 장착 드론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드론 관련 사례가 없으므로 향후 발생될 혹은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충분히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장착 드론이 인격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과 동시에 장래 재발위험의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사례와(II), 카메라 장착 드론을 토지소유자(지상 제3자)가 자체적으로 격추시킨 사안에서 민법 상 긴급피난을 근거로 드론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부정한 사례를 소개한 후(III), 독일 사례에 대한 국내 유사 법률 검토(IV) 및 시사점(V)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재발위험에 따른 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사례

### 1. 참조조문

#### 1.1 독일 기본법상 인격권 (Art. 2 GG)

독일 기본법 제1조제1항4)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제1항5)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규범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실현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은 누

---

이 5천유로까지, 형사재판의 경우 자유형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23, 24 GVG)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사례는 제1심 법원(AG) 사례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두 대상판결의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은 찾아볼 수 없어 AG판결만을 대상판결로 분석하였다.<독일 판례정보사이트: [www.juris.de](http://www.juris.de)>, (최종검색일: 2020.03.06).

4) Art.1 (1) GG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5) Art.2 GG (1) Jeder hat 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soweit er nicht die Rechte anderer verletzt und nicht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das Sittengesetz verstößt.

(2) Jeder hat das Recht auf Leben und körperliche Unversehrtheit. Die Freiheit der Person ist unverletzlich. In diese Rechte darf nur auf Grund eines Gesetzes eingegriffen werden.

구든지 생명권과 신체적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신체의 자유는 침해되면 안 되며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침해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2 독일 「민법」 상 부작위청구권 (§1004BGB)

독일 「민법」 제903조6)는 소유권 권능에 관한 규정으로 자신의 소유권 행사에 있어 어떠한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제1004조7)는 제903조의 소유권에 대한 생활방해배제청구권 및 부작위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제1문에서 소유권이 점유침탈 또는 점유역류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받은 때에는 소유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2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장래에도 소유권이 방해받을 위험 즉, 재발위험(Wiederholungsgefahr)에 관하여 소유자는 부작위를 소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2항에서 일상적으로 수인의 의무를 지는 경우에 제1항의 청구권은 배제된다.

독일의 방해예방청구권은 소유권침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예방조치를 구하는 청구권으로 단순히 장래 침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다른 방해가 염려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제1004조의 적용범위에 있어 제823조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법익에 해당되는 보호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제1004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sup>8)</sup> 즉, 소유권을 침해하고 하고 있는 행위가 제823조 재산, 건강, 신체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Sonstiges Rech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제823조의 그 밖의 권리의 범위 내에 기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 Persönlichkeitsrecht)’

### 6) § 903 Befugnisse des Eigentümers

Der Eigentümer einer Sache kann, soweit nicht das Gesetz oder Rechte Dritter entgegenstehen, mit der Sache nach Belieben verfahren und andere von jeder Einwirkung ausschließen.  
2Der Eigentümer eines Tieres hat bei der Ausübung seiner Befugnisse die besonderen Vorschriften zum Schutz der Tiere zu beachten.

### 7) § 1004 Beseitigungs- und Unterlassungsanspruch

(1) Wird das Eigentum in anderer Weise als durch Entziehung oder Vorenthaltung des Besitzes beeinträchtigt, so kann der Eigentümer von dem Störer die Beseitigung der Beeinträchtigung verlangen. 2Sind weitere Beeinträchtigungen zu besorgen, so kann der Eigentümer auf Unterlassung klagen.

(2) Der Anspruch ist ausgeschlossen, wenn der Eigentümer zur Duldung verpflichtet ist.

8) BGH, Urteil vom 24.06.2004, Az.: I ZR 26/02, NJW 2004, 3032.

으로 포함하고 있고, 인격권에 관한 침해인 경우에도 제1004조에 따른 생활방해 배제 및 부작위청구권을 유추하여 적용하고 있다.<sup>9)</sup> 이때, 침해된 인격권에 대하여 제1004조제2항의 부작위청구권은 재발위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권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장래의 방해에 대한 부작위에 관하여 방해의 근원이 배제되도록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예방적 방어청구권(vorbeugender Abwehrenspruch)”이라고 한다.<sup>10)</sup>

### 1.3 독일 「항공운송법(LuftVG)」 및 「항공운송명령 (LuftVO)」

독일 「항공운송법」 제1조제2항은 열거하고 있는 기체와 더불어 지상 및 수면 30m이상의 영공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체 및 제2문에 무인항공시스템(unbemannte Luftfahrt -systeme)은 이 법에서 의미하는 항공기(Luftfahrzeug)라고 정의하고 있다. 항공운송명령(LuftVO) 제21b조제1항제7호<sup>11)</sup>에 따라 거주지(Wohngrundstücken)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광학적, 음향적 또는 무선 신호를 수신, 전송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이륙중량 250g 이상의 드론은 원칙적으로 주거지 영공을 비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sup>12)</sup>

---

9) BGH, Urteil vom 17.07.2008, Az. I ZR 219/05 Rz. 13, NJW 2008, 3565.

10) BGH, Urteil vom 26.02.2007, Az.: II ZR 13/06, WM 2007. 845; BGH, Urteil vom 10.04.1956, Az.: I ZR 165/54, BGHZ 2,394.

11) § 21b Verbotener Betrieb von unbemannten Luftfahrtsystemen und Flugmodellen

(1) Der Betrieb von unbemannten Luftfahrtsystemen und Flugmodellen ist verboten, sofern er nicht durch eine in § 21a Absatz 2 genannte Stelle oder unter deren Aufsicht erfolgt,

7. über Wohngrundstücken, wenn die Startmasse des Geräts mehr als 0,25 Kilogramm beträgt oder das Gerät oder seine Ausrüstung in der Lage sind, optische, akustische oder Funksignale zu empfangen, zu übertragen oder aufzuzeichnen, es sei denn, der durch den Betrieb über dem jeweiligen Wohngrundstück in seinen Rechten betroffene Eigentümer oder sonstige Nutzungsberechtigte hat dem Überflug ausdrücklich zugestimmt,

12) 다만, 주거 토지의 소유자 또는 권한이 있는 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비행이 가능하다(항공운송명령(LuftVO) 제21b조제1항제7호 단서).

## 2. 사실관계<sup>13)</sup>

2013년 7월 오전 피청구인은 인접토지 소유권자인 청구인의 정원 앞마당을 자신의 드론으로 비행하였다. 피청구인의 드론에는 카메라가 장착된 모델이었다. 청구인의 지인은사건 당시 청구인의 정원에서 일광욕 중이었고, 드론의 엔진소리를 통해 드론을 인지하였으며, 당시 일광욕 중이던 장소 바로 위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비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2013년 12월 피청구인이 더 이상 청구인의 정원을 비행하지 말 것 즉, 부작위 및 의무이행에 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원 상공을 자신의 드론(Flugmodell)으로 비행한 적이 없으며, 카메라로 촬영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인의 드론은 이웃집 주택의 지붕 위를 근접하게 비행 중이었으며, 청구인의 정원과 5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또한 소송 본안 전 쟁점사안과 관련하여 반복적 위험 노출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제시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더러, 한 번의 법익침해로 청구인이 반복적 위험에 노출에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의 드론은 5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이므로 항공운송법(LuftVG) 제1조 및 제16조와 항공운송승인명령(LuftVZO) 제1조에 따라 별도의 이륙승인 없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다.<sup>14)</sup> 피청구인은 운용상 부주의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의 정원(토지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 3. 쟁점사안 및 법원의 판단

### 3.1 쟁점사안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본법 제2조제1항<sup>15)</sup>과 관련하여 제1조제1항제1문<sup>16)</sup>과 「민법」 제823조제1항<sup>17)</sup>과 관련하여 유추적으로 제1004조제1

13) AG Potsdam, Urteil vom 16.04.2015 - 37 C 454/13.

14) 독일항공운송명령

15) Art.2 Abs.1 GG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물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 이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16) Art.1 Abs.1 S.1 GG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항제2문18)의 반복적 위험노출에 관하여 생활방해(재발위험)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을 주장하였다.

「민법」 제905조의 소유권은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방어적 청구권으로, 피청구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미래의 생활방해 즉, 주의의무의 해태에 관한 법원의 인용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포츠담 지방법원(Amtsgericht)은 타인의 토지(거주지 마당) 상공을 비행한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의 장래 재발위험에 따른 청구인의 예방적 부작위청구를 인용하였다. 드론에 카메라장착여부와 상관없이 송수신기능이 있는 드론에 대하여 청구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였으며, 촬영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조치도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다시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 3.2 법원의 판단

### 3.2.1 드론조종자의 취미활동 등 행동자유권 제한

실시간 영상전송이 가능한 장치가 있는 드론이 주택 마당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 충돌할 수 있는 법익은 개인의 행동자유권 즉, 취미로 드론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드론운용에 있어 드론조종자에게 기본법(Grundgesetz)상 행동자유권은 물론 보장되어야 하지만, 드론 운용은 취미생활인 반면 그로 인한 제3자의 사생활침해는 인격권침해이므로, 보호이익에 관한 이익형량에 있어서도 조종자의 행동자유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sup>19)</sup> 즉, 드론운용은 제3자를 방해하지 않고도

17) § 823 Abs.1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 또는 기타 그 밖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8) 독일 「민법」 제1004조 (생활방해청구권 및 부작위청구권) ① 소유권이 점유침탈 또는 점유역류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받은 때에는 소유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는 부작위를 소구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수인의 의무를 지는 경우에 제1항의 청구권은 배제된다.

19) Regenfus, Zivilrechtliche Abwehrensprüche gegen Überflüge und Bildaufnahmen von Drohnen, NZM 2011, 806.

충분히 자신의 취미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생활보호에 관한 이익은 드론운용자의 행동자유권보다 우위에 있음은 물론이다.<sup>20)</sup>

하지만 지상과 근접하게 비행하는 모형비행기의 영공사용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적 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보호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드론사용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모든 행위를 순식간에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해 사건에서의 드론은 항공운송법(LuftVG) 제1조제1항과 달리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sup>21)</sup>

### 3.2.2 개인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외부적 시선 유입의 차단과 상린관계 교란

이러한 드론촬영에 대한 금지는 예를 들어, 아이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즉 책임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여가활동(kindlichunschuldige Freizeitbeschäftigung)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한 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대상판결과 마찬가지로 드론촬영의 여러 풍경 사진 중에 ‘한 부분’으로 ‘우연히’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표화 된 촬영으로 일종의 괴롭힘인 경우에는 명백하게 상린관계(Nachbarschaftsverhältnis)의 교란(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sup>22)</sup> 특히 청구인의 법익침해는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의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법익침해를 바탕으로 향후의 피해로 이어질 만한 개연성이 예상 가능하고, 동시에 재발위험(Widerholungsgefahr)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23)</sup>

20) Regenfus a. a. O., 820 ff.

21) Regenfus a. a. O., 804.

22) 판례는 실제로 드론으로 촬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괴롭힘의 일종으로 드론촬영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법익침해 사실에 해당한다고 본다.

23) Palandt/Bassenge, BGB, 73. Aufl., 2014 § 1004 Rn. 32.



### Ⅲ. 제3자의 긴급피난을 인용한 사례

#### 1. 참조조문

##### 1.1 「형법」 제201a조 사진촬영을 통한 극히 사생활적인 영역의 침해

독일 「형법」 제15장은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201a조<sup>24)</sup>는 ‘극히 사생활적인 영역의 침해’에 관한 규정으로 스스로 타인의 시선을 배제시켜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간에 타인이 접근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항제1호는 주거공간에 있거나 또는 특별히 보호되고 있는 공간을 일별하는 자를 권한 없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전송함으로써, 타인의 극히 사생활적인 영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지 등 타인의 시선을 배제하기 위하여 분리된 곳이란, 예를 들어 집 마당에 울타리나 발코니에 별도의 시설로 외부 시선의 유입을 차단한 곳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곳을 권한 없이 촬영하고 전송함으로써 극히 사생활적인(höchstpersönlichen Lebensbereich)영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제3항은 미성년자(18세 미만)의 노골적 노출사진(Nacktheit)을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거나 제작할 것을 제안하는 것과 더불어 본인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유료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조 제5항제1문<sup>25)</sup>에서는 정범이나 공범이 사용한 사진필름 및 사진촬영기 또는 기타 다른 기술적 도구는 몰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4) § 201a Verletzung des höchstpersönlichen Lebensbereichs durch Bildaufnahmen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von einer anderen Person, die sich in einer Wohnung oder einem gegen Einblick besonders geschützten Raum befindet, unbefugt eine Bildaufnahme herstellt oder überträgt und dadurch den höchstpersönlichen Lebensbereich der abgebildeten Person verletzt,

25) § 201a (5) Die Bildträger sowie Bildaufnahmegерäte oder andere technische Mittel, die der Täter oder Teilnehmer verwendet hat, können eingezogen werden. § 74a ist anzuwenden.

## 1.2 「민법」 제228조 긴급피난

독일 「민법」은 긴급피난에 대해 제228조 및 제90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28조 긴급피난은 ‘타인의 물건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의 임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훼손 또는 파괴가 위험의 회피에 필요하고, 또 그 손해가 위험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6)</sup> 제228조의 긴급피난(Notstand)의 경우에는 위법한 공격의 여부는 고려되어지지 않는다.<sup>27)</sup> 제228조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위험을 초래한 ‘물건(Sache)’이다.<sup>28)</sup> 단지 초래된 위험이 ‘물건(Sache)’에 의해 발생되었고, 그 위험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에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손괴가 불가피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sup>29)</sup>

특히 제228조의 긴급피난의 경우 주관적 요건으로써 방어적 의사를 가지고 위험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성립요건을 요구한다.<sup>30)</sup> 대상판결에서도 판시하고 있음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행위에 도구가 사용되었고 제3자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방어적 의도(Abwehrrabsicht)’에 의한 행위로 그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민법 제228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03조 재물손괴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sup>31)</sup>

26) § 228 Notstand

Wer eine fremde Sache beschädigt oder zerstört, um eine durch sie drohende Gefahr von sich oder einem anderen abzuwenden, handelt nicht widerrechtlich, wenn die Beschädigung oder die Zerstörung zur Abwendung der Gefahr erforderlich ist und der Schaden nicht außer Verhältnis zu der Gefahr steht. 2Hat der Handelnde die Gefahr verschuldet, so ist er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t.

27) Schreiber, Die Rechtfertigungsgründe des BGB, JURA 1997, 29.

28) Pawlik, Der rechtfertigende Defensivnotstand, JURA 2002; 독일 민법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방어로 제227조(Notwehr) 정당방위와 제228조 긴급피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27조의 정당방위의 경우,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어로 독일 형법 제32조 적용요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29) 민법 제90조의 물건뿐만 아니라, 제90a조에 따른 동물의 경우에도 제228조의 긴급피난을 적용한다.

30) Boemke/Ulrici, BGB AT 2.Aufl., 2014, Rn. 11.

31) Erb,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JuS 2010, 17.

### 1.3 「민법」 제904조 긴급피난

제904조는 “현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간섭과 그 간섭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발생할 손해에 비하여 위협되는 손해가 지나치게 큰 경우, 소유자는 물건에 대한 타인의 간섭에 대하여 금지할 권리가 없다. 소유자는 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sup>32)</sup>고 규정하고 있다. 제9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Notstand)은 ‘공격적 긴급피난(Angriffsnotstand)’으로 제228조와 구분된다. 하지만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협하는 위험의 존재, 자기 소유의 물건으로부터 초래된 위험이 아닐 것,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반적으로 손괴)가 불가피 할 것과 주관적 위법성조건 사유로 긴급상황에 대한 인식과 방어의도로 행위 할 것으로 제228조의 긴급피난과 유사하다.<sup>33)</sup> 제228조의 경우 물건으로 인한 위험에 대하여 위험에 처한 자가 그 해당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고, 제904조는 물건의 소유자(A)는 위험에 처한 제3자(B)가 소유자(A)의 물건에 간섭하고자 할 때, 그 제3자(B)의 긴급피난을 의미하고, 물건 소유자의 물건에 대한 공격적 행위로, 제3자(B)의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이해된다.<sup>34)</sup>

## 2. 사실관계

지난 2018년 7월 16일 피고인은 오후 자신의 집 앞마당을 비행하는 드론을 본인 소유의 공기총으로 격추하였다.<sup>35)</sup> 드론은 피고인의 주차장 천장으로 추락하여 파손되었으며, 드론은 시가 약 1천오백 유로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드론 소유자의 드론을 손괴한 죄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는 피고인의 3살, 7살의 딸들이 놀고 있었고, 그 상공으로 드론이 비행하자 해당 드론이 피고인의 딸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

32) § 904 Notstand

Der Eigentümer einer Sache ist nicht berechtigt, die Einwirkung eines anderen auf die Sache zu verbieten, wenn die Einwirkung zur Abwendung einer gegenwärtigen Gefahr notwendig und der drohende Schaden gegenüber dem aus der Einwirkung dem Eigentümer entstehenden Schaden unverhältnismäßig groß ist. Der Eigentümer kann Ersatz des ihm entstehenden Schadens verlangen.

33) Schreiber, Die Rechtfertigungsgründe des BGB, JURA 1997, 29.

3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연구에서 밝히도록 한다.

35) 가해자의 총기 사용에 관하여도 관련 법규에 따라 발포 허가를 요하지 않는 총기류에 해당되므로 사용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Erbs/Kohlhaas, 223. EL 2019, § 52 WaffG Rn. 62).

성에 대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피고인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부인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마당으로 나오자 해당 드론이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비행하자 부인도 위협을 느껴 곧바로 딸들을 보호하고 피고인은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드론은 5-15m의 높이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부인의 동의 없는 비행이었으며, 자신이 사용한 공기총 역시 구매허가를 요하지 않는 통상적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드론은 가로세로 40cm에 카메라가 장착된 쿼드콥터(로터가 4개 장착된)로 1km 이상이 거리를 비행 할 수 있는 기체였다.<sup>36)</sup>

### 3. 쟁점사안

#### 3.1 사적영역 침해(§201a StGB)

독일 「형법」 제201a조에 따른 사적영역 침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05조제1항제1문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 자신과 아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 부인의 고소가 없으므로 고려되지 않는다.<sup>37)</sup>

#### 3.2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피고인의 재산권은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거 앞마당에 대한 토지소유권은 드론 촬영으로 인하여 위협되었음은 분명하다. 「민법」 제905조제1항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토지 위의 공간 및 토지 하의 지괴에 모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 상하에 대한 간섭에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높이의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해당 드론이 토지 상공 5-15m로 비행 중이었고, 이러한 근접한 거리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이해관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항공운송법 제1조는 「민법」 제903조 소유권에 대한 특별법적 제한으로 「민법」 제905조제1문에 따른 토지소유권 양태와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36) 이하에서는 독일 리자 지역 지방법원의 판단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별도로 각주 표시하지 않음.

37) Solmecke/Nowak, Zivile Drohnen Probleme ihrer Nutzung, MMR 2014, S. 431, 434.

재산권 보호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은 항공운송법 제1조제2항에 따른 영공 사용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항공기체로 인한 영공 사용은 「민법」 상의 토지 소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유로이 운용될 여지가 있다.<sup>38)</sup>

### 3.3 긴급피난(Notstand)

해당 하급심 판결의 쟁점은 피고인의 드론 격추로 인하여 드론이 파괴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더불어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 제288조의 긴급피난을 근거로 재물손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이다.

특히 「민법」 제228조 긴급피난이 간접적인 공격(mittelbar Angriff)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다.<sup>39)</sup> 기본적으로 통설에 의하면 간접적인 공격에도 긴급피난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sup>40)</sup> 물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위협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물건이 공격수단의 도구로써 위협이 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인용하면서<sup>41)</sup> 즉, 물건이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42)</sup> 대상 판결에서는 사람(조종자)에 의해 드론이 조종되었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하였다. 통설에 따라 「민법」 제228조 긴급피난(Notstand) 및 제904조의 긴급피난(Notstand)<sup>43)</sup>이 적용된다고 리자법원은

38) 하지만, 항공운송법 제1조제1항의 영공사용은 이미 제정된 법규 및 국내에서 적용되는 국제법 및 유럽의회의 법규로 제한되고 있는 않는 선에서만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이륙허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한다.

39) 즉, 제228조의 긴급피난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물건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초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여야 하지만, 대상판결의 경우 드론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여 물리적 손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공중에서 호버링 상태로 피고인의 자녀를 주시한다거나 내지는 피고인의 부인의 움직임에 따라 비행 중이었다. 이 경우에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촬영으로 인한 불안감과 더불어 (대상판결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드론의 추락으로 인한 손해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간접적 위협으로써 리자법원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40) Fischer, 65. Auflage 2018, § 34 StGB Rn. 33.

41) JurisPK, 8. Auflage 2017, § 228 BGB Rn. 7.

42) Michael Pawlik,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 zugleich ein Beitrag zum Problem strafrechtlicher Solisaritätspflichten-, de Gruyter, 2002, S. 312.

43) 제904조(긴급피난) 타인이 현재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건에 간섭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압박한 손해가 그 간섭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발생할 손해보다 과도하게

판단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에서는 긴급피난의 허용 범위에 있어 공격적 방어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위협이 물건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드론은 단지 “공격수단(Angriffsmittel)”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즉, 지상에서 조종자에 의해 조종자의 의도대로 조종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땅이라는 수단만으로는 현재의 위협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드론 손괴는 공격적 방어행위로서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제228조의 경우 방어적 긴급피난이라면, 제904조는 공격적 긴급피난으로 대상판결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긴급피난 규정은 모두 고려한 것은 드론을 실질적으로 운행한 자(이를테면 드론 운항자<sup>44)</sup>)와 드론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이며(제904조), 사람의 물리적인 공격이 아닌 물건에 의한 물리적 공격에 대한 방어(제228조)였기 때문이다. 즉, 제3자(대상판결에서의 피고인, 토지소유자)는 실질적 공격자인 드론 조종자의 현재의 침해로 인하여 타인(실제 드론소유자)의 드론을 손괴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45)</sup>

### 3.4 동의 없는 드론 이륙에 따른 책임

나아가 항공운송법(LuftVG)의 하위법령으로 항공운송명령(LuftVO) 제21b조 제1조제7호에 따라 운용상의 제한이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무인항공시스템과 모형비행기 나아가 항공운송명령 제21a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소와 운용자의 감독 하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륙중량 250g 이상 혹은 광학적, 음향 및 무선신호가 장착되어 있고, 송수신 및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지역 상공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해당 거주지역의 소유권자 혹은 그 밖의 사용권한이 있는 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해당 드론기체는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는 기기에 해당되므로 소유자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에게 비행동의를 구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드론

---

큰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는 물건에 대한 간섭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소유자는 그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4) 자세히는 김성미, “소형드론 운항자에 대한 동물점유자책임 유추해석의 가능성”,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4권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45) Schönke/Schröder, 30. Auflage 2019, § 32 StGB Rn. 32, 33, Fischer 65. Auflage 2018, § 32 StGB Rn. 24

소유주는 항공운송명령 제21b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체로 피고인의 거주지 토지 상공으로의 드론 운영은 항공운송명령 제44조제1항제17b호에 따라 위법하고,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 4. 법원의 판단

##### 4.1 긴급피난에 있어 공격적 방어행위의 인정

긴급피난으로 인한 물건의 손괴는 오직 위험을 현재 직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sup>46)</sup>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로지 회피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이다. 하지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 즉,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지 않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228조의 긴급피난과 마찬가지로 임박한 위난을 위한 도망인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sup>47)</sup> 위난과 회피에 따른 손해는 반드시 비례적 관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물건의 가치를 덜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져야 한다.<sup>48)</sup>

대상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법익의 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드론을 격치시킨 것보다 더 완화되고 적합한 다른 수단은 명백하지 않다. 또한 「민법」 제228조의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회피하기 위한 “도망”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이는 현재의 인격권침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지, 완벽하게 차단 내지는 방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울타리가 둘러진 자기의 토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공으로의 방어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5-15m 높이의 드론의 현재적 공격을 멈추기 위하여 완화된 조치란 명백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으로도 드론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조치를 제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4.2 인격권 침해에 따른 현재의 위난 여부 인정

특히 드론으로 사적 거주지를 촬영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verletzung)이며,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익은 충분하다. 독일

46) JurisPK, 8. Auflage 2017, § 228 BGB Rn. 9.

47) JurisPK, 8. Auflage 2017, § 228 BGB Rn. 11.

48) JurisPK, 8. Auflage 2017, § 228 BGB Rn. 12.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위협되고 있는 그리고 이미 발생된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의 경우 그 정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이익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보호로, 사생활은 자율적인 영역으로 사생활을 타인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스스로 분리시키고 유지할 권한이 있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 즉,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묘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한 권리가 있다.<sup>49)</sup> 사유재산의 범위 내에서, 특히나 주거용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더욱더 사용자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이므로 타인으로부터 “감시 또는 스토킹(Ausspähung)”으로 관찰당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sup>50)</sup> 사적으로 운용되는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법익 보호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sup>51)</sup>

#### 4.3 재물손괴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결론적으로 포츠담 하급심 법원은 대상관결에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전원의 작동 여부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형법」 제34조<sup>52)</sup> 및 「민법」 제228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에 관하여 고려되어지고 있으며,<sup>53)</sup> 결국 「민법」 상 긴급피난(Notstan

49) Sebastian Mayr, Nutzung in (engen) Grenzen - Der neue Rechtsrahmen für dem Betrieb zivil Drohnen, rescriptum(Münchener studentische Rechtszeitschrift) Ausgabe 11 2017/11, S. 116-118.

50) 대상관결에서 파손된 드론에 관하여 형사상 재물손괴도 쟁점이 되었다. 리자법원은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형법」 제34조의 일반적 적법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법익침해(드론파손)는 제34조의 ‘현재의 위험’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1) Solmecke/Nowak, a.a.O., 431 (434).

52) 독일 「형법」 제34조 정당한 긴급피난(Rechtfertigender Notstand):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기타의 법익에 대한 달리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 속에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을 실행한 자는 충돌하는 이익, 특히 관련된 법익과 긴박한 위협의 정도를 교량하여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난행위가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53) Fischer, 65. Auflage 2018, § 34 StGB Rn. 33; BeckOK, 41. Edition 01.02.2019, § 34 StGB Rn. 23



d)<sup>54)</sup>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03조 재물손괴죄(Sachbeschädigung)로 처벌되지 않는다.<sup>55)</sup> 급박한 위난에 대한 자신의 혹은 타인의 보호를 위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타인의 재물에 관한 보호이익은 배제 된다.<sup>56)</sup> 또한 독일 「민법」 제904조의 긴급피난에서 “현재의 위협(gegenwärtige Gefahr)”이란 독일 기본법 제2조제1항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상황과 독일 「형법」 제201a조의 사진촬영을 통한 극히 사생활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위협이 해당될 수 있다.<sup>57)</sup> 그러므로 카메라장착 드론을 직접 격추한 사안에서 제3자(드론 격추자)의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피고인(지상제3자 및 토지소유자) 드론 손괴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sup>58)</sup>

#### IV. 국내 관련 법률 검토

국내 「형법」에는 독일 형법 제201a조와 같은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국내 현행 법률 상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관하여는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관련 법률로는 「항공안전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하지만 카메라장착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54) 물론 이때 제227조 정당방위(Notwehr)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5) JurisPK, 8. Auflage 2017, § 228 BGB Rn. 20.

56) JurisPK, 8. Auflage 2017, § 228 BGB Rn. 4.

57) Solmecke/Nowak, a.a.O., 431 (434) m. w. N.; vgl. auch AG Potsdam, Urteil vom 16. 04.2015, Az.: 37 C 454/13 zu einer Verletzung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durch den zivilen Drohnenflug.

58) 독일 형법 제34조에서도 긴급피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방어적긴급피난(Defensivnotstand)으로 민법 제228조의 긴급피난보다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법 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 받지 않는다. (자세히는, JurisPK, 8. Auflage 2017, § 228 BGB Rn. 2).

## 1. 「항공안전법」 및 그 밖의 개별법

### 1.1 드론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스토킹 범죄

별도의 12kg미만의 소형드론의 경우 특별한 허가 또는 금지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처벌기준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sup>59)</sup> 「항공안전법」 제161조는 드론의 불법사용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법 제127조 제2항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비행제한공역 이외에서 비행승인 없이 150m이하의 고도로 12k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을 주간에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상 드론운영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민간 드론 사용자의 경우 이처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으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은 언제나 농후하다. 물론 「항공안전법」 제129조제4항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할 것을 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sup>60)</sup> 물론 드론촬영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3호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sup>61)</sup>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에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고, 상술한 독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에 「경범죄처벌법」의<sup>62)</sup> 적용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59) 김명수, “드론의 안전한 운영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법제논단 10월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 213면.

60)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미국정책입법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회지, 제29권제2호, 2014, 138면 이하.

61)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영상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2)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1.2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상 문제점

### 1.2.1 행위주체자의 한정

상술한 바와 같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행위의 주체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다. 같은 법에서 의미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하므로 취미로 드론을 운용하는 조종자를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행위주체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 뿐더러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에도 제한이 있을 것이다.

또한 촬영에 관한 행위를 한 행위의 주체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행위주체자로 보고, 해당 법률에서의 행위자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즉, 개인이 영리 혹은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미로 드론을 운용하며 촬영된 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 1.2.2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른 촬영인데,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는 일정하지 않은 공간에서 지속적이

---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지 않게 촬영되는 경우이므로 이 또한 적용 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드론촬영과 관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sup>63)</sup>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적용여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인의 신체”와 “성적 수치심”이라는 책임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한다. 그 밖의 인격권 등의 법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에는 적용 범위에 있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민법」 상 관련 규정

상술한 바와 같이 개별법 등에서 적용 규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내 민법 상의 적용 규정에 관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지상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및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선 국내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침해와 더불어 제17조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는 분명하다.<sup>64)</sup>

국내 「민법」 제211조의 소유권은 같은 법 제212조에 따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 토지의 면적에 따른 지상과 지하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드론촬영은 이러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토지소유권) 침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근접토지소유권자는 이웃 토지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드론촬영을 통상의 용도라고 받아들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접토지소유권자가 이를 수인할 의무는 없을 것이다. 제217조에서 촬영에 관한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일상적 생활방해라는 측면에서 “기타 이에 유사한

6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4) 김선이, “무인항공기 관련 법제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4권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12, 14-15면.

것”에 대한 해석 범위에 드론으로 인한 이웃 토지 사용의 방해 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는 있다.

## 2.1 부작위청구권

국내 「민법」 상 점유자는 자기의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5조에 따라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갖는다. 소유권자도 제214조에 의하여 방해배제 및 예방청구권을 갖는다. 국내 판례는 「민법」 제212조에 따라 토지소유권이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65)</sup> 또한 수인한도이론에 따라 단지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함에 있어 토지 사용·수익의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어야 하며, 이때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sup>66)</sup> 영공을 이용하는 비행 기체는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소형드론과 같이 낮은 고도에서 운용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

독일 「민법」 제1004조와 유사규정으로 국내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금지 청구권이 있다. 국내 「민법」도 통상의 용도 내에서 적당한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으며(제2항), 상린관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드론으로 인하여 거주지 내에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 청구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때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국내 「민법」 제217조에 따라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sup>67)</sup> 상술한 대상판결의 경우 독일의 사례로 마당이

65)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66)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67) 류창호, “드론의 운행과 토지소유권의 침해” 경희법학 제50권제4호, 2015, 263면.

있는 주택의 형태이지만, 한국은 아파트 혹은 공유주택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거주자의 자기 은닉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발생한다. 하지만 ‘엿보기(Ausspähung)’ 와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감시는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기에 충분하므로 국내에도 독일법원의 판단은 국내에서도 검토의 여지는 충분하다.

반면, 대상관결에서도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사생활 및 인격권, 나아가 재산권 침해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재발위험 방지를 위한 예방적부작위청구권행사에 있어서도 국내 「민법」 제217조를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작위청구권은 인격권 등과 같은 대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이미 침해가 발생하였고, 그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sup>68)</sup> 그러므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경우,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재발위험에 대한 부작위청구권의 행사는 국내법상 고려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 2.2 긴급피난

### 2.2.1 위법성조각사유

국내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으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가해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의 경우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침해의 위법성과 행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sup>69)</sup> 사람과 물건에 의하여 생긴 위난의 경우에 긴급피난은 허용된다. 과거 긴급피난의 경우 구 「민법」에서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생긴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긴급피난을 인정하였었다. 하지만 현대 「민법」은 적용범위를 더 넓게 하여 위난이 물건으로부터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포괄한다. 나아가 물건의 훼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까지도 포함한다.<sup>70)</sup>

6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69) 한삼인,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민사책임의 성립여부”, 『인권과 정의』 제438호, 2013, 100면.

### 2.2.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은 ① 현재성, ② 급박성, ③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일 것, ④ 부득이 한 경우이다. 특히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 물건의 훼손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하며, 위난을 피함으로써 보호하게 될 법익과 피난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없어야 한다고 한다.<sup>71)</sup> 피난행위의 원인자인 직접적인 가해자 혹은 그의 물건에 대하여 행하는 것을 긴급피난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sup>72)</sup>

정당방위의 경우 불법에 대한 방어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고, 긴급피난에서는 이익의 교량 및 평가의 측면이 강조되는 피난행위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외에는 적당한 피난수단이 없어야 하며, 위험을 피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피난행위로 생긴 손해와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없어야 한다.<sup>73)</sup>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위난은 제761조제2항의 ‘급박한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sup>74)</sup>

## 3. 검토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법은 드론촬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침해우려에 관하여 특별히 명시적인 규정을 찾기 어렵고,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몇몇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드론촬영으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유지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 가해자인 드론 조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sup>75)</sup> 이미 온라인에 업로드 된 영상을 완벽하게 삭제할 수 없다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는 적용상의

70) 곽윤직(편)/김황식(집필), 『민법』주해 [제XIX권 채권(12)], 박영사, 2005, 273면.

71) 한삼인, 상계서, 101면.

72) 곽윤직(편)/김황식(집필), 상계서, 273면.

73) 곽윤직(편)/김황식(집필), 상계서, 273면.

74)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592 판결.

75) 최근 국토교통부는 기체신고제에 대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2020년 2월 19일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2kg이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여 일명 드론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567](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567)>.

한계점이 발견된다.

직면한 문제에 대한 민사상 부작위청구권에 대한 적용여부와 더불어 자체적인 무력행사로 즉, 드론기체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있어 리자판결과 마찬가지로 긴급피난 내지는 국내법상 정당방위를 들어 드론격추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내법 적용상에 있어서는 세심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IV. 마치며

첫 번째 포츠담 사례(II)는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지상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모든 취미용 촬영 드론에 대해 영공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드론 산업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드론은 지상에 근접한 높이로 주변을 비행하고 있을 경우, 드론이라는 단어가 가진 문리적 의미 그대로 뿜뿜대는 소음이 상당하고, 대상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비행하며 송수신이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제3자의 불안감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이에 따라 비디오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불법적인 비행(unerlaubte überflug)이 재발위험성을 가진 경우 제3자(토지소유자)는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의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을 갖는다는 대상판결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

두 번째 리자 사례(III)와 마찬가지로 드론 촬영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는 자체적인 공격적 방어 방법을 선택할 여지도 충분하다. 인터넷으로 촬영되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고, 이미 업로드 된 개인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발생시킬 위험은 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사생활 보호이익은 취미로 운용되는 드론 산업보다도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더 중대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법원은 가해자(제3자)에 의한 드론 손괴 행위는 독일 「민법」 제228조 및 제904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고, 오히려



피해자(드론운용자)는 독일 「형법」 제201a조제1항제1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드론이 매우 낮게 비행하고 있었다는 점과 가해자의 부인을 드론 카메라로 주시하고 움직임에 따라 비행하였다는 점에서 긴급피난의 ‘현재의 급박한 위험’에서 모면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격추시키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상판결 모두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두 사례 모두 제1심 판결로 종결되었으므로 하급심 판결만 소개하였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첫째, 지상의 제3자는 카메라장착 드론의 카메라 작동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의 작동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둘째, 일반거주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분명한 사생활침해라는 점이다. 나아가 카메라장착 드론에 대한 자체적 방어에 대한 위법성 조각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카메라장착 드론의 제3자 법익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국내법상 「항공안전법」은 물론 촬영과 관련된 현행 개별법이 행위자의 주체성과 더불어 구성요건에 있어 적용상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 드론 관련 분쟁에 관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독일의 드론 관련 분쟁에 관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법익침해 관하여 국내법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민법」 적용가능성 논의에 대한 아쉬움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및 판례]

- 곽윤직(편)/김황식(집필), 「민법」주해 [제XIX권 채권(12)], 박영사, 2005.
- 김명수, “드론의 안전한 운영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법제논단』 10월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
-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미국정책입법안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4.
- \_\_\_\_\_, “무인항공기 관련 법제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4권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 김성미, “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 \_\_\_\_\_, “소형드론 운항자에 대한 동물점유자책임 유추해석의 가능성”,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4권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9.
- 류창호, “드론의 운행과 토지소유권의 침해” 『경희법학』 제50권제4호, 경희대 법학연구소, 2015.
- 한삼인,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민사책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인권과 정의』 제438호, 대한변호사협회, 2013.
-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592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독일 문헌 및 판례]

- Brehm, Wolfgang/Berger, Christian, Sachenrecht 2.Aufl., 2006.
- Boemke, Burkhard / Ulrici, Bernhard, BGB Allgemeiner Teil 2.Aufl., 2014.
- Bernd von Heintschel-Heinegg(Hrsg.) in: BeckOK-Stgb 41. Edition 2019.
- Erbs/Kohlhaas, Strafrechtliche Nebengesetze, Werkstand: 227. EL November 2019.
- Erb, Volker,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JuS 2010, 17
- Juris Praxis Kommentar BGB 8. Auflage 2017.

Mayr, Sebastian, Nutzung in (engen) Grenzen - Der neue Rechtsrahmen für dem Betrieb zivil Drohnen, rescriptum(Münchener studentische Rechtszeitschrift) Ausgabe 11 2017/11.

Michael Pawlik, der rechtfertigende Notstand - zugleich ein Beitrag zum Problem strafrechtlicher Solisaritätspflichten-, de Gruyter, 2002

Regenful, Tomas, Zivilrechtliche Abwehrensprüche gegen Überflüge und Bildauf -nahmen von Drohnen, NZM 2011, 799.

Fisher, Tomas, Strafgesetzbuch 65. Auflage 2018.

Palandt/Bassenge, BGB, 73. Aufl., 2014 § 1004.

Schönke/Schröder, 30. Auflage 2019, § 32 StGB Rn. 32, 33, Fischer 65. Auflage 2018, § 32 StGB.

Schreiber, Die Rechtfertigungsgründe des BGB, JURA 1997, 29.

Solmecke, Christian/ Nowak, Fabian, Zivile Drohnen Probleme ihrer Nutzung, MMR 2014, 431.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002) § 904.

AG Potsdam, Urteil vom 16.04.2015 - 37 C 454/13.

AG Riesa, Urteil vom 24.04.2019 - 9 Cs 926 Js 3044/19.

BGH, Urteil vom 24.06.2004, Az.: I ZR 26/02.

BGH, Urteil vom 17.07.2008, Az. I ZR 219/05 Rz. 13.

BGH, Urteil vom 26.02.2007, Az.: II ZR 13/06.

BGH, Urteil vom 10.04.1956, Az.: I ZR 165/54.

## 초 록

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주제어** : 제3자, 법익, 카메라장착 드론, 부작위청구권, 긴급피난

## **Abstract**

### **Third Party's Legal Interest Protection from Commercialization of Drones -A focus on Decision of the German District Court-**

Sung-Mi Kim\*

With controlling Drones, although it was discussed in the previous study which showed a possibility. Which is personality and property rights of third parties could be violated while operating the drone with a video camera. But It's hard to find out precedents related to drones in Korea.

In case of that someone try to control the drone which is equipped with a camera in a yard of neighborhood, the German District Court (Potsdam) considered an operator of drone has little bit of careless to do his duty and admit nonfeasance claim in the owner of the one's property for prevention to repetition of similar situation according to a nonfeasance claim for prevention to Section 1004 (1) sentence 2 of the German Civil Code(BGB). The drone which is equipped with a camera have possibilities to disrupt property and personal rights of the owner. Because a danger in repetition is getting larger regarding the violation of law.

Moreover, there is a case that someone shot down the drone which is equipped with a camer. Because it has a risk to interrupt private life and cause some dangerous in our life. The German district court(Riesa) recently have considered that controlling the drone with a camera in private spaces is illegal as a violation of personal life. In addition to, the action of property owner shot down drone is a legal according to § 228 of the German Civil Code(BGB) which is caeled "Necessit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pply to foreign cases directly to Korea, similar cases

---

\* Part-time Lecture, Korea Aviation University.

are likely to be occurred in Korea. The decision of the German District Court showed implications to Korea. As demand for the camera-equipped drone increases in Korea, it is time to discuss specific measures for drone violations.

**Key Words** : Third Party, Legal Interest, Drones with camera, nonfeasance claim, Necessity